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82호
------	------

<p>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건설도시국장
제출연월일	2023. 5. 16.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82호
----------	------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1. 제안이유

건설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발주 검토 규정 신설(안 제5조)
- 나. 지역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한 단속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기획감사실-4202(2023.04.24.)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복지정책과-11753(2023.4.10.)호]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예산실-4122(2023.04.04.)호]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6. ~ 2023. 4.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시의 맡은일)”을“(시의 책무)”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관내 사무실 운영하여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 직접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건설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러운”을 “자랑스러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건 설 과 장	홍 재 창
	건설행정팀장	정 은 숙
	담 당 자	이 은 미 (746-617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의 맡은일) ① ~ ⑥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시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p> <p>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p> <p>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p>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관내 사무실 운영하여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 직접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신 설>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
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
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
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
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
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
표건설사의 경우 지역건설업

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
센트 이상으로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으로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
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
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
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성실히 이행
한 건설업자에게 별도의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 제6조 (생략)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7.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
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8조 · 제9조 (현행 제5조 및 제6
조와 같음)

제10조(기능) -----
-----.

- <삭제>
2. ~ 6. (현행과 같음)
 7. 자랑스러운 -----

 8.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1조 (생략)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의 권장

제13조 (생략)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건설과장 홍재창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공구분할 사전검토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3.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5조의4(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충청남도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또는 하도급 비율,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에게 규칙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적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